

정원운영에 관한 규정

제정 : 2018. 01. 29.

담당 : 기획팀(950-5424)

----- 목 차 -----			
제1조(목적)	제2조(적용)	제3조(용어 정의)	제4조(정원운영의 원칙)
제5조(정원운영 절차)	제6조(정원운영위원회)	제7조(기능)	제8조(준용규정)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한국성서대학교(이하 '본교'라 한다)의 건학이념을 구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학의 정원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) 이 규정은 본교 「학칙」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대학, 학부(전공), 학과의 편제 및 입학정원 운영에 적용한다.

제3조(용어 정의) 대학의 정원운영 이란 학과의 조정, 신설, 통합, 분리, 변경, 폐지를 말하며,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학과 개편 : 학과의 정원조정, 신설, 통합, 모집중단, 폐지, 변경 등을 통해 대학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.
2. 정원 조정 : 모집단위의 입학정원(이하“정원”이라 한다.) 증원 또는 감원을 말한다.
3. 학과 신설 : 기존에 없던 학과가 신규로 개설하는 것을 말한다.
4. 학과 통합 : 기존 2개 혹은 그 이상의 학과를 하나의 학과로 통합하는 것을 말한다.
5. 학과 분리 : 기존 1개의 학과에서 2개 이상의 학과로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.
6. 학과 변경 : 학과의 명칭 변경을 말한다.
7. 학과 폐지 : 학과 자체가 폐지되어 학생정원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.

제2장 정원운영

제4조(정원운영의 원칙) 정원운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의한다.

1. 본 대학의 설립이념과 교육목적의 수행
2.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른 정책 수행

3. 대 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대학의 능동적 대처
4. 대학재정의 효율적 운영

제5조(정원운영 절차) ①정원운영 실무 담당은 기획처에서 관장한다.

② 정원 운영 및 조정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정원운영기본계획수립
2. 대내·외 여건분석
3. 학과경쟁력 분석
4. 학과 의견수렴
5. 정량적 조정계획 수립
6. 정량적 조정에 대한 학과 의견 수렴
7. 정원조정계획 확정
8. 결과 통보 및 관련 부서 후속 조치 수행

제6조(정원운영위원회) 대학특성화 및 대학의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라 학과개편 및 정원조정이 필요한 경우 정원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대학발전위원회가 정원운영위원회를 겸할 수 있다.

제7조(기능) 정원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
1. 학생의 입학정원 조정
2. 학과 신설, 통합, 분리, 변경, 모집정지 등에 관한 사항
3. 기타 정원운영 및 조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

제8조(준용규정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규정을 따르며, 관련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

부 칙

- 1.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01월 29일부터 시행한다.